

의안번호	제 138 호
의 결 연 월 일	2011년 4월 일 (제299회)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손 문 규 의원
발의연월일	2011년 3월 31일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8
----------	-----

발의년월일 : 2011년 3월 31일

발의자 : 손문규 의원(대표발의)

심기보, 김도경, 김광수

노광기, 장선배, 김재종

1. 개정이유

-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정비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된 일부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와 이해하기 쉬운 조문으로 정비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조성 관련 조문 규정(안 제3조)
- 식품진흥기금의 기금사용 용도 조문 규정(안 제4조)
-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안 제5조)
 - 기금 운용관 : 보건복지국장
 - 분임 기금운용관 : 식품의약품안전과장
 - 기금 출납원 : 위생관리 담당사무관
- 기금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조정(안 제6조)
 - 위원장 : 보건복지국장에서 → 행정부지사로
 - 당연직 위원 : 식품의약품안전과장에서 → 보건복지국장으로
- 기금의 존속 기한 조문 명기(안 제14조)
 - 식품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6월 30일까지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개정 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협의 : 식품의약품안전과 협의

6. 관계법령 발췌 : 붙임

7. 예산수반(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도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용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 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법시행령이 정하는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등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
2.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사업지원
3.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교육 활동 지원
4.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
8.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용자 사업

9. 그 밖에 영 제61조 사업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②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보건복지국장
2. 분임 기금운용관 : 식품의약품안전과장
3. 기금출납원 : 위생관리담당사무관

④ 기금의 출납은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기금 및 식품위생 관련 민간전문가 3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보건복지국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식품위생 관련 사회단체의 대표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써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사회단체 대표자가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생관리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운용 계획과 기금운용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기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용자사업) ① 도지사는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의한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사업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을 위한 시설개선 용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용자대상, 용자신청 서류, 용자한도, 용자대상자 선정 및 용자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용자금 대여) ① 도지사는 금융기관에 용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용자금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3.26>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 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37조 및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7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 업무정지,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1.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제27조에 따른 지정취소 등으로 식품위생검사업무 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2.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의 식품진흥기금(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귀속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와 시·군·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이 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 귀속시키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91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1. 제4조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2. 제5조, 제6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제75조에 따라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 부과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의 귀속, 귀속 비율 및 징수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82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32조제1항 각호(제8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후단, 제10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0.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을 취소하고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진흥기금(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에 귀속된다.<개정 2008.3.21>

⑤ 삭제<2008.3.21>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채발행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④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